

□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2011.3.30.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령 (2012.3.26.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규칙 개정 (2012.4.10. 일부개정, 2012.4.10. 시행)
<p>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p> <p>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③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p> <p>④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p>		<p>제1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생략)</p>

(2011.3.30.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령 (2012.3.26.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규칙 개정 (2012.4.10. 일부개정, 2012.4.10. 시행)
<p><u>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u></p> <p>⑤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선택에 <u>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u></p> <p>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u></p> <p>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p>		

(2011.3.30.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령 (2012.3.26.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규칙 개정 (2012.4.10. 일부개정, 2012.4.10. 시행)
<p>3.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p> <p>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p>		<p>제43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2011.3.30.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령 (2012.3.26.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규칙 개정 (2012.4.10. 일부개정, 2012.4.10. 시행)
<p>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p> <p>③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p> <p>⑤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①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p>		<p>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③ ~ ④ (생략) 1. (생략)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⑤ ~ ⑥ (생략)</p>

(2011.3.30.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령 (2012.3.26.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규칙 개정 (2012.4.10. 일부개정, 2012.4.10. 시행)
<p>②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u> 2.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u>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u> 3.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p>44조(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 신고 등)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일시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 운영을 중단·재개 또는 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생략) 6. <u>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u> 7. <u>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u> 8. (생략)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조치계획 등에 따라 시</p>

(2011.3.30.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령 (2012.3.26.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규칙 개정 (2012.4.10. 일부개정, 2012.4.10. 시행)
<p>4.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p> <p>④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p> <p>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p> <p>3.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①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p>		<p>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설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44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p>

(2011.3.30.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령 (2012.3.26.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규칙 개정 (2012.4.10. 일부개정, 2012.4.10. 시행)
<p><u> ,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③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한다.</u></p>		<p><u>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상태 및 부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진단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u></p> <p>② <u>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유형·정도·등급,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③ <u>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 여부 결정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및 본인부담금 결정 통보서에 따라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u></p>

(2011.3.30.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령 (2012.3.26.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규칙 개정 (2012.4.10. 일부개정, 2012.4.10. 시행)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적격성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⑤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p>		<p>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시설 이용자가 법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시설이용 개시일 3.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 <p>⑤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p>

(2011.3.30.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령 (2012.3.26.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규칙 개정 (2012.4.10. 일부개정, 2012.4.10. 시행)
<p>_____,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결과 보고서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3.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절차의 대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시설 이용 중단절차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2011.3.30.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령 (2012.3.26.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규칙 개정 (2012.4.10. 일부개정, 2012.4.10. 시행)
<p>⑥ 5항에 따른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p> <p>⑦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 이때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36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2.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3.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p>관한 사항</p> <p>7. 계약기간</p> <p>8.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p> <p>⑦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환경 및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견본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그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p> <p>⑧ 법 제60조의2제7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p>

(2011.3.30.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령 (2012.3.26.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규칙 개정 (2012.4.10. 일부개정, 2012.4.10. 시행)
<p>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하 "서비스 최저기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4. 능력개발 5. 일상생활 6. 개별지원 7. 환경 8. 직원관리 9. 시설운영 10.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p>

(2011.3.30.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령 (2012.3.26.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규칙 개정 (2012.4.10. 일부개정, 2012.4.10. 시행)
<p>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p> <p>① <u>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② <u>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③ <u>시설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p> <p>① (생략)</p> <p>②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2011.3.30.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령 (2012.3.26.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규칙 개정 (2012.4.10. 일부개정, 2012.4.10. 시행)
<p>79조(비용 부담) ① 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2조(비용 부담)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p> <p>③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지원하는 시설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시설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p>	

(2011.3.30.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령 (2012.3.26.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규칙 개정 (2012.4.10. 일부개정, 2012.4.10. 시행)
<p>80조(비용 수납) ① 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 복지실시기관은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p> <p>② 삭제</p>	<p>다. 이 경우 자산 및 소득 등의 산정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p> <p>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금액, 감면 대상 및 감면 금액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68조(공통 서식)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카드,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득·재산신고서, 제31조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및 제39조에 따른 장애수당 등 비용납부통지서, 제44조의2의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및 본인부담금 결정통보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 서식에 따른다.</p>

(2011.3.30.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령 (2012.3.26. 일부개정, 2012.3.31. 시행)	시행규칙 개정 (2012.4.10. 일부개정, 2012.4.10. 시행)
<p align="center"><u><제10517호, 2011.3.30></u></p> <p><u>제1조(시행일)</u>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u>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은 제58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59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중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신고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조 ~ 제4조 (생략)</p>		<p align="center">부칙 <제120호, 2012.4.1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시설 운영자와 종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으로 본다. 다만, 계속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